

# 장학 규정

제 정 : 1985. 01. 01.

최근개정 : 2020. 12. 23.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학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장학생 선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단체 또는 장학금 기부자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무관장)** ①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은 총장이 관장한다.

② 본 규정의 관리와 운영은 학생처장이 관장한다.

##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4조(설치)** 본교의 장학금 지급 정책에 관한 심의기구로 장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기획예산처장, 입학처장, 국제협력처장 및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 운영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처 장학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정책
2.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3 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제9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10.21.>

① 교내장학금 :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단, 재학생 교내장학금의 성적우수장학금 중 학과수석장학금, 학년수석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과 기타장학금 중 성적향상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학칙 시행세칙 제37조제9항에 의해 별도로 정한 성적평가 방법에 의한 경우 총장이 지급대상, 지급기준, 장학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16.05.25.개정][2016.11.09.개정][2017.04.26.개정][2017.05.24.개정][2017.07.19.개정][2018.05.16.개정][2018.07.25.개정][2018.10.17.개정][2019.01.30.별표1개정][2019.06.05.별표1개정][2019.09.11.별표1개정][2019.11.13.별표1일부개정<개정 2020.02.12. 2020.05.27. 2020.07.29. 2020.10.21.2020.12.23.>

② 교외장학금 : 교외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2016.11.09.개정]

③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해당 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을 취소한다.

④ 두(2) 학기 이상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연속 장학생의 경우 계속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

중지된 학기도 지급 기간 학기에 포함한다.

⑤ 장학금은 정규학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10.21.]

**제10조(장학금 지급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 및 제적 학생
2. 수업 연한 초과한 경우(단, 국가유공자 장학생 본인 및 배우자, 총장격려장학금 수혜자, 임원장학금, 공로장학금, 지정 기탁 적립장학금 수혜자는 예외로 한다.)(2018.07.25.개정)(2019.01.30.일부개정)
3.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단, 제13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성적우수장학금은 별표 1 기준에 의한다.)(2019.01.30.일부개정)
4. 해당 학기 중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장학금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자인 경우
7.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11조(장학금 신청 및 서류)** ①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해당 학기에만 신청할 수 있고, 소급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장학생 선발)** 학생처장은 장학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대상자 및 각 학부(과) 및 기관에서 추천된 학생 중 장학금 종류별 지급기준 등에 따라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기준액)**

①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기준액은 장학 규정 및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학금 지급총액이 등록금(신입생인 경우 입학금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16.11.09.개정][2018.07.25.개정]

1. 생활비 : 학업 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식비 등
2. 대가성 장학금 : 근로장학금, 군 장학금, 학생역량 강화활동비(교육훈련비, 학생회 활동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장학금, 연구보조비, 연수 체재비 등)(2018.07.25.개정)
3. 일(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격려성 지원금
4. 발전기금 및 교외장학금, 지정기부금이 등록금과 무관하고 등록금 감면이 아닌 경우

③ 이중 수혜 대상이 될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교외장학금(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한다. 단, 신입생 장학생 선발 시 이중 수혜 대상이 될 경우 수혜금액이 높은 장학금 하나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6.11.09.개정]

**제13조의2(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금 수혜자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 사유 발생 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환수한다.[2016.11.09.개정]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환수한다.[2016.11.09.개정]

1.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2. 장학금 지급기준 미달 등 반환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제14조(지급 결과 보고)** 학생처장은 장학금 지급 결과에 대하여 장학위원회 및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장학사정관)** ①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관련 개별상담 및 각종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계 곤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② 장학사정관은 장학 관련 개별상담을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칙)** ①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처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장학 규정 및 장학금 지급 세부 규정에 의해 진행된 장학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본다.

(기존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 전 적용한 장학 규정 및 장학금 지급 세부 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별표1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의 세종대왕장학금(B)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3)(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별표1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의 세종대왕장학금(A,B,C)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재학생 및 신입입생에게 적용한다.

(6)(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0조(장학금 지급 제한) 2호의 지정 기탁 적립장학금의 수업 연한 초과한 경우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9)(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0조(장학금 지급 제한) 3호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규정 제19022호,2019.06.0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규정 제91073호,2019.09.11.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시기)** 이 개정 규정 제9조제1항 [별표1]의 입학 특별장학금과 보훈 장학금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부 칙(규정 제91095호,2019.11.13.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규정 제91116호,2020.02.12.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시기) 이 개정 규정 제9조제1항 [별표1]의 신입생 특별 스마트장학금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00031호,2020.05.27.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0053호,2020.07.29.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9조제1항의 별표 1(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신입생 교내 장학금 중 ‘외국인 전형 세종대왕 장학금(A)’, ‘외국인 전형 세종대왕 장학금(B)’, 입학금 면제 장학금 및 재학생 교내 장학금 중 ‘체육특기자장학금’은 202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00082호,2020.10.21.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0100호,2020.12.23.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3호 관련)

1. 신입생 교내장학금

유형 구분	장학금 명칭	지급 대상	지급기준	장 학 금 액	비 고
성 적 우 수 장 학 금	신 입 생 (정시)	스톡스장학금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등급이 각각 모두 1등급인 자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자	① 입학금 및 4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 ② 학업장려금(연간도서비 320만원 및 식비,기숙사비) 지원 ③ 해외자매결연대학 교환학생 파견선발 시 특전 부여
		감리교학원이사장장학금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인 자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자	① 입학금 및 4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 ② 학업장려금(연간도서비 120만원 및 식비,기숙사비) 지원
		목원대학교총장장학금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인 자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자	① 입학금 및 4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 ② 학업장려금(연간도서비 80만원 및 식비,기숙사비) 지원
		수능성적우수장학금	수능수석합격자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가/나형), 탐구 영역(상위 1과목)의 백분위 점수 합이 최고점인 자로서, 영어영역 1등급인 자]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3.5이상인자 ※ 2018학년도부터 시행	① 입학금 및 4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 ② 기숙사비 지원
		단과대학수석장학금(정시)	정시모집군을 통합한 단과대학 수석자 1명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자	입학금을 제외한 1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
		단과대학차석장학금(정시)	정시모집군을 통합한 단과대학 차석자 1명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자	입학금을 제외한 1년간 등록금 70% 감면
		학부(과)수석장학금(정시)	학부(과) 수석합격자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70% 감면
	신 입 생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장학금	수석합격자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3.5이상인자 ※ 2018학년도부터 시행	① 입학금 및 4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 ② 기숙사비 지원
		단과대학수석장학금	단과대학 수석합격자(일반학생전형)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자	입학금을 제외한 1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
		TV.영화학부수석장학금(수시, 일반학생전형)	TV.영화학부 수석합격자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자	입학금을 제외한 1년간 등록금 70% 감면
		학부(과)수석장학금(수시, 일반학생전형과 지역인재전형 통합)	학부(과) 수석합격자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70% 감면
		사회기여자전형장학금	수석합격자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70% 감면
		지역인재전형장학금	수석합격자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70% 감면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장학금	수석합격자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70% 감면
농·어촌학생특별전형장학금	수석합격자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70% 감면		
학생부종합전형장학금	수석합격자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자	입학금을 제외한 1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		

유형구분	장학금 명칭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장 학 금 액	비고									
기타 장학금	신입생 (수시)	체육특기자장학금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인정한 국제 및 국내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 성적이 우수한 자(입상증명서)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인자	신입생 중 국제, 국내대회(전국규모) 입상자(1~3위)-1년간 감면 1위 등록금 100% 감면(입학금 제외) 2위 등록금 70% 감면(입학금 제외) 3위 등록금 50% 감면(입학금 제외)										
	신입생 (추가)	신입생특별스마트장학금	추가모집최종합격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지급기준 및 장학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등급의 합</td> <td>3~10등급까지</td> <td>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100% 감면</td> </tr> <tr> <td>11~15등급까지</td> <td>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70% 감면</td> </tr> <tr> <td>16 등급 이상</td> <td>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50% 감면</td> </tr> </tbody> </table>		지급기준 및 장학금액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등급의 합	3~10등급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100% 감면	11~15등급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70% 감면	16 등급 이상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50% 감면
지급기준 및 장학금액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등급의 합	3~10등급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100% 감면													
	11~15등급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70% 감면													
	16 등급 이상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50% 감면													
성적우수 장학금	정시, 수시 (공통)	실기우수장학금	본 대학교 주최 전국고등학생음악경연대회 입상자(1~3위) 및 전국 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 입상자(대상, 최우수, 우수)로서 고교졸업 당해년도 본대학교 입시에 응시하여 합격한자.(단, 고교졸업생으로서 미술실기대회에 입상한자는 입상 당해연도에 한함) * 음악대학, 미술·디자인대학에 합격한 자에 한함	재학 중 직전학기 전공실기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이며 전체성적 평점평균이3.0이상인자(입상실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감면 •1위(대상) : 4학기 등록금 100% 감면 •2위(최우수상) : 2학기 등록금 100% 감면 •3위(우수상) : 1학기 등록금 100% 감면										
		영어능력우수장학금	공인영어능력시험 우수자 TOEIC 900점이상자, IBT TOEFL 100점이상자(택 1)	최근 2년이내의 성적(1회에 한함)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 입학성적 반영시	신청									
기타 장학금		영어능력우수장학금	공인영어능력시험 우수자 TOEIC 900점이상자, IBT TOEFL 100점이상자(택 1)	최근 2년 이내의 성적(1회에 한함)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 입학성적 미반영시	신청									
		목원사랑동문장학금	부모 모두가 본 대학교 학부(과) 또는 대학원 졸업생의 자녀로서 입학한 자		입학 시 첫 학기 등록금 100만원 지급	신청									
	정시, 수시 (공통)	목원스타트장학금	인문, 사회계열 수시, 정시 모집에 각종 전형별로 지원하여 최초 및 충원합격하고 입학한 자	일반학생전형, 사회기여자전형, 지역인재전형, 목원사랑인재전형 지원자에 한함 *장학금 이종수혜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합격자 중 입학자 - 1학기 등록금 80만원 감면</li> <li>충원합격자 중 입학자 - 1학기 등록금 40만원 감면</li> </ul>										
			이공계열, TV영화학부, 국제예술산업학부 수시, 정시 모집에 각종 전형별로 지원하여 최초 및 충원합격하고 입학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합격자 중 입학자 - 1학기 등록금 100만원 감면</li> <li>충원합격자 중 입학자 - 1학기 등록금 50만원 감면</li> </ul>										
	지정기탁 적립장학금 (신학과 신입생 특별장학금)	최초합격자(수시, 정시) 충원(수시, 정시) 및 추가모집 합격자	신학과 동문발전기금 모금을 통해서 신입생(수시, 정시 및 추가모집 정원내외)들에게 특별장학금 지급(세입대체)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100% 감면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50% 감면	2016학년도부터 시행										

유형 구분	장학금 명칭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장학금액	비고	
기 타 장 학 금	외국인 전형	입학금 면제 장학금	본교에 신·편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① 본교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대학 및 기관에서 추천한 외국인 유학생 ② 본교 국제교육원을 수료한 외국인 유학생	입학금 전액 감면		
		세종대왕장학금(A)	국제교류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외국인 유학생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인자.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해당학기 등록금 100% 감면		
		세종대왕장학금(B)	본교 외국인 유학생 중 신(편)입생	TOPIK 3급(예·체능계 2급)이상 취득자	등록금 20% 감면		
				TOPIK 4급(예·체능계 3급)이상 취득자	등록금 30% 감면		
				TOPIK 5급(예·체능계 4급)이상 취득자	등록금 40% 감면		
			본교 외국인 유학생 중 재학생	TOPIK 4급 (예·체능계 3급)이상 취득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등록금 40% 감면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	등록금 50% 감면	
	TOPIK 5급 (예·체능계 4급)이상 취득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등록금 55% 감면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	등록금 65% 감면				
기타 장학금	재입학 및 편입학	입학특별장학금	재입학, 편입학한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음	입학 시 1회에 한하며, 본 교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	입학금 감면(단, 국가장학금 중 입학금 지원을 받은 경우 초과금액에 한하여 등록금에서 감면 가능)		

## 2. 재학생 교내장학금

유형 구분	장학금 명칭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장학금액	비고
성적 우수 장학금	학과수석장학금	각 학부(과)에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가장 우수한 자(성적우수장학생 수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학부(과)별, 전공별 및 학년별 재학인원의 10%내에서 선발하며, 기 선발된 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재 선발은 하지 않음(5명으로 끝난 경우 반올림) 단, 정규 최종학기 이상자는 재학인원에서 제외함.</li> <li>• 재학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li> <li>• 과목누락(P과목포함)이 없고, 17학점(정규 최종학년은 14학점)이상 취득한 자(단, 인턴쉽 P과목 학점은 제외)</li> <li>• 전공학점은 2,3학년 8학점이상, 정규 최종학년은 5학점이상 취득한 자</li> <li>• 동점자처리는 ①평점평균②평점계③신청학점(취득학점) ④전공평점평균 순으로 높은자</li> <li>• 상기 4개항목으로도 선별되지 않을 경우 학과수석장학금은 동점자 모두에게 지급하고, 학년수석 및 성적우수자는 장학금액을 분배하여 지급</li> <li>• 교외 및 교내장학금에서 한 개의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를 받아 중복이 될 경우 차순위 자에게 지급</li> </ul>	등록금 100% 감면	선발
	학년수석장학금	각 학부(과) 학년에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가장 우수한 자(성적우수장학생 수에 포함)		등록금 80% 감면	
	성적우수장학금	학과수석 및 학년수석 차순위부터 학과(전공)/학년에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우수한 자		등록금 50%, 35%, 20% 감면	
성적 우수 장학금	전공실기장학금	재학 중 학부(과) 전공별 직전학기 전공실기 성적이 우수한자로서 성적장학금의 수혜가 없고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재학 중 직전학기 전공실기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이며, 전체 성적의 평점평균 3.0이상인자	등록금 70만원 감면	추천
성적 우수 장학금	신학대학특성화장학금	신학대학 재학생으로서 성적장학생을 제외한 성적우수자 중 선발된 자	신학대학의 선발규정에 의거	1학기 등록금 50만원 감면	선발
성적 우수 장학금	창의인재장학금	1.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부전공 중 1개 이상의 전공을 신청한 후 상기 신청한 전공에 한해서 1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중인 재학생	2.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학생에게 매학기 지급 3. ①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이며, 취득학점 17학점(정규 최종학년은 14학점)이상 취득 4. ② 지급대상에 명시된 1개 전공 교과목 중에서 직전학기 6학점이상 취득(단, 조기졸업자, 재학연장자, 정규학기 이상 재학자는 제외) ※ 2018학년도부터 시행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일정액 지급(지급대상 및 예산현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결정)	선발
저소득층 장학금	목원희망장학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0~8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6이상인자(국가장학금 지원 성적기준 적용)	교내 장학금 예산범위 내 등록금 일부 감면	선발
저소득층 장학금	장학사정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가 선별된 후 경제사정 변화로 경제적 곤란등으로 등록이 어려운 학생을 장학사정관이 심사한 후 추천하여 지급	성적제한 없음	등록금 일부 감면 교내 장학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100만원 범위 내)	신청 후 선발



유형 구분	장학금 명칭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장 학 금 액	비 고
저소득층 장학금	목회자직계자녀장학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중 기독교대한 감리회의 현직 교역자(교단에서 파송된 담임 전도사 포함)로서 교회 연말 결산액이 3,500만원 미만인 교역자직계자녀 및 타계한 교역자 직계 자녀로서 본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지급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이상인자.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등록금 70% 감면	신청
저소득층 장학금	해외선교사직계자녀장학금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파송한 해외선교사의 직계자녀로서 경제사정이 곤란한 재학생 중 신학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이상인자.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등록금 80% 감면	신청
저소득층 장학금	다문화가정지원장학금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의 재학생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년1회 장학금예산 범위내)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이상인자	등록금 50만원	신청 후 선발
저소득층 장학금	다자녀가정지원장학금(A)	한 가정에 3자녀이상 있는 재학생 중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 할 수 있음(년1회 장학금예산 범위내)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해당자에 한함(0~8분위)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이상인자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	선발
기타 장학금	다자녀가정지원장학금(B)	한 가정에 3자녀이상 있는 재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음(년1회 장학금예산 범위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해당자에 한함(9~10분위)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인자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	선발
저소득층 장학금	희망드림장학금(A)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으로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성적기준 미달로 수혜받지 못한 자	①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5~2.6미만인 자 ② 학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	매학기말 신청 후 선발
저소득층 장학금	희망드림장학금(B)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2018-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교비 대응이 정해진 사업의 장학금 수혜자	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에서 정한 교비 대응 금액	선발 교비대응

유형 구분	장학금 명칭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장 학 금 액		비 고
저소득층 장학금	모범장학금(A)	경제사정이 곤란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인 자로서 소속대학 학부(과)장, 학장 또는 학생처장이 추천한 자(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0~8분위)). 단, 장학금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이상인자(단과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 지급)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		추천
기타 장학금	모범장학금(B)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인 자로서 교내외 장학금 수혜내역이 없거나 일정금액 미만인자로서 소속대학 학부(과)장, 학장 또는 학생처장이 추천한 자. 단, 장학금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인자(단과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 지급)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		추천
근로 장학금	목원근로장학금	교내 행정부서 및 학부(과) 근로학생으로 선정된 자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이상인자(등록금 범위 외로 지급)	최저임금 기준액(학년도 적용)		신청
근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자 중 교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이상인자(등록금 범위 외로 지급)	국가근로 기준액 적용(국고80%,교비대응20%)		신청
교직원 장학금	교직원복지장학금	본 대학교 교직원(재직 중 타계한 자 및 명예퇴직자 포함)의 직계자녀, 교직원의 배우자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급. 단, 명예퇴직자의 경우 퇴직당시 재직중인 자녀에 한함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인자.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직원 직계자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감면</li> <li>교직원 배우자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0% 감면</li> </ul>		신청
기타 장학금	목원곰두리장학금	재학생 중 본인 및 부모가 장애인 등록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A급</li> <li>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6급): B급</li> </ul>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이상인자 (단,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2.5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li> </ul>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본인 A급 100만원 B급 70만원 부모 모두 A급 90만원 부모 중 1인 A급 30만원		신청
기타 장학금	성적향상장학금	직전학기 보다 성적의 평점평균이 1.0이상 향상된 재학생에게 지급 (4학년 1.2학기는 제외)	성적제한 없음	<b>학사경고자 (15학점 취득자)</b> 2.0이상 향상:10만원 3.0이상 향상:20만원 4.0이상 향상:30만원	<b>18학점이상 취득자</b> 1.0이상 향상:10만원 2.0이상 향상:20만원 3.0이상 향상:30만원	선발

유형 구분	장학금 명칭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장 학 금 액	비 고
기타 장학금	체육특기자장학금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인정한 재학생 또는 체육특기자 재학생 중 국제 및 국내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성적이 우수한 2~4학년 학생에게 지급(입상증명서)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전년도 입상 성적에 따라 지급(개인·단체전)-1년간 감면 • 국제대회:1위~3위 ▶ 등록금 100% • 국내대회:1위 ▶ 100%,2위 ▶ 80%,3위 ▶ 60% • 2부대회(전국체전,해당연맹추천 2개 이외의 전국대회), • 총장배:1위 ▶ 70%, 2위 ▶ 50%, 3위 ▶ 30%	선발
기타 장학금	해외연수장학금	해외자매결연대학에 파견학생으로 선발된 자 및 외국학 전공자 해외파견학생으로 선발된 자	국제협력처 외국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제교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함(장학금 변경에 대한 규정 개정시는 장학위원회 의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선발
기타 장학금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직계자녀 : 8학기까지만 지급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성적 및 학기에 관계없이 졸업시까지 지원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이상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는 성적 제한 없음)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보훈처 교육지원 업무기준에 의거 지원하며, 학점제한 없음)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감면(국고50%, 교비50%) 단, 본인 및 배우자일 경우(교비100%)	신청
기타 장학금	교육자직계자녀장학금	전국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교직원직계자녀로서 본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지급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20만원	신청
기타 장학금	목원가족장학금	해당학기 등록한 가족(부모, 형제자매, 부부)중 재학생 1인 에게 지급 (단, 대학원 재학생도 포함하되 지급은 본 대학 재학생에게 지급)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2인 : 가구당 50만원 3인 이상 : 가구당 100만원	신청
기타 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사회봉사 기간에 방학기간도 포함되며 학기당 120시간(횟수30회) 이상인 재학생 중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대별 3명한)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인 자(등록금 범위 외로 지급).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50만원	신청
기타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본 대학교에 입학한 자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이상인 자(통일부 교육지원 업무기준에 의거 지원).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감면(국고50%, 교비50%)	신청
기타 장학금	목원사회봉사단장학금	사회봉사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봉사단으로서 지역사회의 각종 재난 및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일정기간(시간) 이상의 봉사 활동에 참여한 재학생에게 지급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등록금 범위 외로 지급).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1시간당 8,000원(최대 50시간까지 인정)	신청 및 선발

유형 구분	장학금 명칭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장학금액	비고
기타 장학금	학부(과) 및 부서장학금	학부(과) 및 부서에 장학예산을 배정하여 자체 선발된 재학생에게 근로성, 대가성 및 포상 성격으로 지급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은 별도 기준표에 의거 해당부서 자체적으로 결정 (등록금 범위 외로 지급)	일정액	추천
기타 장학금	총장격려장학금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및 기타 학교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학생에게 지급	성적 제한 없음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은 별도 기준표에 의거(학업장려금으로 지급)	일정액	추천
기타 장학금	임원장학금	재학 중 총장이 인준한 학생회 임원 및 교내 해당기관의 임원으로서 활동한 자	성적 제한 없음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은 별도 기준표에 의거(등록금 범위 외로 지급)	일정액	추천
기타 장학금	공로장학금	재학 중 신문사, 방송국, 학생자치봉사단, 졸업 준비위원회, 교지편집위원회임원과 홍보사절단(홍보도우미, 인터넷홍보도우미, 태권도시범팀)으로 활동한 자	성적제한 없음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은 별도 기준표에 의거(등록금 범위 외로 지급).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일정액	추천
기타 장학금	학군단장학금	재학 중 학군단 장교 후보생으로 활동한 자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5이상인자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은 별도 기준표에 의거(등록금 범위 및 등록금 범위 외로 지급)	일정액	추천
기타 장학금	채플봉사장학금	재학 중 신학대학 및 교목실에서 활동한 채플 봉사자	성적제한 없음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은 별도 기준표에 의거(등록금 범위 외로 지급)	일정액	추천
기타 장학금	마일리지장학금	취창업지원단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 마일리지 일정 점수에 도달한 재학생에게 지급(년1회)	성적 제한 없음 취창업지원단에서 정한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에 의거 (등록금 범위 외로 지급)	일정액	추천
기타 장학금	봄(SIGHT) 인증 장학금	봄(SIGHT)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 봄(SIGHT) 인증 프로그램의 일정 점수에 도달한 재학생	당해년도 평점평균 3.0 이상인자로서 대학교 육개발원에서 정한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에 의함 ※ 2017-2학기부터 시행	일정액(년 1회) ※ 등록금 범위 외로 지급	신청 후 선발
기타 장학금	지정기탁적립장학금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으로 모금되어 적립된 장학금으로 해당부서의 지급요청에 의해 지급 (세입대체/생활비 포함)	성적 제한 없음(등록금 범위 및 등록금 범위 외로 지급)	일정액	

(별표 2)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제9조제2항 관련)**

1. 교외장학금

유형 구분	장학금 명칭	지급 기준	지급 시기 / 방법	지급액
국가	정부지원 장학금	① 장학금 명칭 : 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 2유형, 국가장학금 2유형(지방인재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예체능계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역대), 희망사다리장학금, 보훈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다문화멘토링장학금,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등. ② 지급기준 : 한국장학재단 및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	학기중, 등록금 선 감면	일정액
사설 및 기타 / 지방 자치 단체	사설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① 장학금 명칭 : 사설 및 기타(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정수장학금, 외부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기부장학금 등), 지방자치단체(의용소방대자녀 및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등). ② 지급기준 : 장학금을 기탁한 기관,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학기중	일정액